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111714 보험에 관한 소송

- 원 고
1. 김하은
 2. 김예은
 3. 김이안
 4. 김이루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유명자

원고들 주소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104, 가동 402호

(역탑리, 동림아파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기

- 피 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서초동)

대표이사 홍원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대표이사 김중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타

담당변호사 김은지

변 론 종 결 2023. 12. 15.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2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5.부터 2023. 4.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2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김유정(개명 전 성명 : 김정주,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 |
|---|
| 1. 상품명 : 무배당삼성올라이프수퍼보험III (0994) |
| 2. 계약일자 및 계약번호 : 2009. 6. 26. / 증권번호 : 60901551250000 |
| 3. 계약일자 및 피보험자 : 망인 |
| 4. 수익자(사망) : 법정상속인 |
| 5. 보험기간 : 2009. 6. 26.부터 2087. 6. 26.까지 |
| 6. 보험가입납입액 : 월 91,130원 |
| 7. 보장내역 |
| - [기본]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망 시 50,000,000원 |
| - [추가]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망 시 50,000,000원 |

나. 망인과 피고 삼성화재 사이의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이하 '정신질환 면책약관'이라 한다)

다. 망인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1. 상품명 : 내Mom같은 어린이보험1507 (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기간 : 2015. 8. 10.부터 2115. 8. 10.까지
 보험료 납입기간 : 20년
 보험료 : 32,930원
 담보명 : 보호자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 : 1,000,000원)
- 2. 상품명 : (무)메리츠 3대질병보장보험1604(2종) (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기간 : 2016. 9. 28.부터 2067. 9. 28.
 보험료 납입기간 : 20년
 보험료 : 32,780원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담보명 : 일반상해사망 · 고도후유장해 (가입금액 100,000,000원)

라. 망인은 2021. 8. 27. 19:1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말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들인데,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사망보험금을 피고 삼성화재에게는 2021. 12. 24., 피고 메리츠화재에게는 2021. 12. 30. 각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중증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상해사망을 요건으로 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삼성화재는 보험계약 당시 정신질환 면책약관을 망인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으므로, 위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피고 삼성화재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면책되어야 하고, 정신질환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삼성화재의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당시 정신질환 면책약관을 원고에게 설명해 주었고, 위 약관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다. 피고 메리츠화재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부터 계획적으로 자살을 결심한 후 실행에 옮겼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망상, 환청 등 심한 증상이 없이 우울증이 호전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로서 피고 메리츠화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¹⁾

3.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

1) 피고 메리츠화재는 피고 삼성화재와 달리 고의 면책 약관에 대한 주장, 입증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것은 상법 제659조에서도 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보험사고가 우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보험법의 일반원리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판결,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한편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하여는 이미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법원이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나.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해사망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망인은 2019. 1.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21. 7.까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증의 우울,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으로 외래 치료를 받아왔고 2021년 5월과 7월 진료 시에는 우울, 불안 증상 이외에 자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증상도 있었는데,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중증의 우울 상태에서 정상적인 현실 판단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져 자해 행동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로부터 망인의 진료기록 등에 관한 의료자문 의뢰를 받은 한양대학교병원 정신의학과 노성원 교수도 망인은 공황 증상 및 대인관계 회피 등의 증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항우울제, 항정신병약물, 항불안제, 수면제 등 4가지 계열의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망 전 마지막 진료일인 2021. 7. 6.에는 두 가지의 항우울제(Argotin, Brintellix)가 모두 최고 용량으로 처방되고 있었는데, 망인은 이러한 중증의 우울증 상태에서 왜곡된 사고로 인한 상실감,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 죄책감, 무력감, 무망감 등을 가지게 되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매어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로부터 망인에 대한 의료자문을 의뢰받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도 망인은 2018. 12.경 불안감, 초조감 및 이인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이후 약물 복용이 시작되었고, 이후 불안 증상은 일부 호전되었으

나 기분의 변동성, 과민성과 무력감 및 자살 충동이 지속되어 손목을 자해하는 행위가 보였으며, 2019. 1.경부터는 충동적으로 목을 매는 행위가 배우자에 의해 저지되고 이에 응급치료를 받은 후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중증 우울증으로 진단되어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온 상태임을 전제하면서, 망인은 지속적으로 주요 중증 우울증의 진단 하에 약물 복용을 하였으나 신체 및 정신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우울증의 진단 및 충동적인 기질이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인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목을 매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④ 피고 메리츠화재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송지영이 이 법원에 보내온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우울감, 불안, 불면, 대인 긴장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자해가 반복되는 등 우울증이 호전된 소견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지속 또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망인은 치료저항성의 중등도 이상의 고도 수준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세 차례의 자살 시도력이 있었고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포자기, 무망무원감과 자살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자녀돌보기나 가정생활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할 능력이 상실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이르러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⑤ 위와 같이 망인의 주치의, 원고들이 의뢰한 의료자문 회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 등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대체로 공통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4. 피고 삼성화재의 정신질환 면책약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면책약관의 해석

망인과 피고 삼성화재 사이의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삼성화재가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한다.

나. 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여부

피고 삼성화재는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므로, 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보험법의 일반원리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내용의 약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의한 보험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은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약관도 아니고,²⁾ 이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예외적인 약관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³⁾

다. 약관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

2) 피고 메리츠화재의 경우 정신질환 면책약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약관이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은 정신질환 면책약관의 불공정 약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대법원이 위 약관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어도 위 약관이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됨을 방증하고 있다.

을가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삼성화재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청약서에 '약관을 수령하였고, 약관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자필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자의 약관 명시·설명 의무의 이행은 보험계약자가 해당 약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삼성화재가 정신질환 면책약관에 대하여 망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는 정신질환 면책약관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약관 내용을 들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하는 피고 삼성화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보험금 지급 액수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피고 삼성화재는 각 25,000,000원[=(기본 상해사망 보험금 50,000,000원 + 추가 상해사망 보험금 50,000,000원) × 1/4]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2. 30.부터⁴⁾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3. 4. 19.까지⁵⁾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메리츠화재는 각 25,250,000원[=(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1,000,000원 +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100,000,000원) × 1/4]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로

4) 원고들은 2021. 12. 27.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보험금 청구일은 불산입하고 2021. 12. 25.부터 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은 2021. 12. 30.이다.

5) 지연손해금 기산일 차이 이외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본다.

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 5.부터⁶⁾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3. 4.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하현우

하 현 우



6) 원고들은 2022. 1. 2.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보험금 청구일은 불산입하고 2021. 12. 31.부터 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은 2022. 1. 5.이다.

정본입니다.

2024.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신부식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